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한 번호 *H*8 제출년월일 : 1995. 3. .

제 출 자: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내무부의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 및 시·도 화재예방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시·도화재예방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규정을 삭제 (안 제30조)
 - 지정수량 1/5이상 1미만인 소량 위험물 신고 삭제
 -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신고 삭제
 -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 취급 신고 삭제
- 나. 소량 위험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규정 삭제 (안 제43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개정근거 : 시·도화재예방 조례개정준칙안 <예방 13801 47 ('95. 2. 9)>
- 관련법규 : 소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27조

소 방 법

- 제17조(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외 기준
 (이하 이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7호(소량위험물의 취급)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조례 호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를 "지정수 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43조 제1항중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21 안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제 2 절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제 2 절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30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삭 제) 신고) ① 영 별표 3의 지정수량의 5분 의 1이상 지정수량 미만(일반주택, 가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및 농 기계용 유류취급소등은 제외)의 위험물 과 지정수량이상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음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 한 위험물,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거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기준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필증 별지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시설을 얌수 한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3조(벌칙)① <u>제28조 내지 제31조의</u> <u>규정</u> 에 위반한 사람은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3조(벌칙)① <u>제28조, 제29조 및 제</u> 31 <u>조의 규정</u>
② ~ ③ (생 략) (별지제1호서식) ^{(소 및 위 및 중} 목수기전문학교	②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소달시작 귀하 년 월 일 신교자 축소 전화 번 성명 (서월도는 날만) 기업하급 장소 전 경 루 점 축 역 및 유명중인 최연지공단 1월 최연화공수학 의 대 수 왕 기 개 또 는	
# 급명병회제요 가장 또는 최근 장소의 위치 및 센 비 제 게요 소약속성비용의 게 요 세 장 취임 기 간 거 다 웹 요 만사 당 표 전 수 보 장 속	
에 2: 1. 병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가설명, 우리 사무소의 소제자를 기입할 것. 2. 표현은 기업하지 및 것 3. 제공화균망소의 안내도를 정우될 것	

(별지제2호서식) 	Aune	(삭 제)	
위험을 ^{[주 핵 년 발 중}] 위로소 홍도백자연고서 발	29		
e 0 4 4 Deutaus Daue			
2 4 + ±			
W D T X			
B 생 치리가면 생 형			
इ. सम्बर			8
7 A A A A A			
B # U # #			ă.
선고인	•		
- 17 1 1 1			
* 7 4 4 *	* * A		Ŧ.
(별지제3호서식)	4	(삭 제)	
(별지제3호서식)	4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4	(삭 제)	
(별지제3호서식) ○ 및 로 위원들소상취공소성자연고토론	4	<u>(삭제)</u>	
(별지제3호서식) - 이 및 로 위원률소략취급소명자연고료를 보면 주민무취보호	4	(삭 제)	
(별지제3호서식) ○ 역 로 위험률소장취급소정치연고통증 역 주민무취연호	사도 제작들이 같이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 및 로 위한 등소관 취급소설 최신고 등을 경영 수인무취임소 수 소 대원분역시하게 제임소리 제 소리 회하여 난 및 및 장심 설계선고를 통하였다는 문제함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 제 로 위한물소작취급소설되신고를들 안 해 주민무취임소 안 보 대단분역시문제역업소에 제 소역 회하여 난 제 및 당시설 설립선고를 필요했다는 문제합 1. 설시단계및 : 2. 위 제 :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C 및 로 위험률소관취급소설차선교통증 경 및 수선무취원보 수 보 대권분역시체계역업교체 및 조역 최하여 난 및 및 검사설 설계선교육 문화업문을 운영합 1. 설치단계및 : 2. 번 시 : 3. 설계 목계 :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 및 로 - 함께 로스 함께 군소 및 최선 교육을 및 및 수단무취임도 수 소 - 대권분에서부계여명조에 제 조에 의하여 난 및 및 및시설 웹페인조를 웹하였음을 유명합 1. 설치단계및 : 2. 위 시 : 3. 설치 문제 : 4. 번조 바 및 : O 제 및 시설 :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이 및 도 위험 등소란 취급소설 최선 교통을 인 및 유건문화원호 인 및 대건물역시하기역업소에 제 소액 의하여 본 및 및 간시설 설치선고를 통하였다는 문제함 1. 설치단계및 2. 전 시 등 기 3. 설치 등 위 : 4. 선고 바람 : 이 제 참시 제 :	가도 위험들레끌의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 및 로 - 및 및 로 - 및 및 로 소설 최근 소설 최신 교육을 및 및 수건부 최선호 - 수 보	가도 위험들레끌의	<u>(삭제)</u>	
(별지제3호서식) 이 제 로 위원 등소란 취급소설 최근 소설 최신 교통증 인 제 주인무최선호 인 제 주인무최선호 인 제 제작으로 제작되었는 유명합 1. 설치선택및: 2. 제 제 : 3. 설치 목 제 : 4. 선고 사항 : 이 제 장시계 : 이 제공제원들: 제 휴 대 수 합	가도 위험들레끌의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이 및 표 위험 등소관 취임소설 최선고 표준 인 및 이 수선무취원보 인 및 연합에서 문제적합교에 제 교육 회하여 본 및 및 인시설 업체선교육 및하고 등을 문제함 1. 설치단계및 : 2 및 시 : 3. 설치 문제 : 4. 선교 사항 : 이 제 장시계 : 이 제공화합을 제 휴 설 수 및 및	가도 위험들레끌의	<u>(삭 제)</u>	
(별지제3호서식) 이 및 표 위험 등소관 취임소설 최선고 표준 인 및 이 수선무취원보 인 및 연합에서 문제적합교에 제 교육 회하여 본 및 및 인시설 업체선교육 및하고 등을 문제함 1. 설치단계및 : 2 및 시 : 3. 설치 문제 : 4. 선교 사항 : 이 제 장시계 : 이 제공화합을 제 휴 설 수 및 및	가도 위험들레끌의	<u>(삭 제)</u>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년 3월27일 내 무 위 원 회

I. 심 사 경 과

-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장
- 2. 회부일자 : 1995년 3월 22일
- 3. 상정일자 :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1995. 3. 27)

상정, 심의,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1. 제 안 이 유

내무부의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 및 시·도화재예방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시·도화재예방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관리에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소량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규정을 삭제 (안 제30조)

- 지정수량 1/5이상 1미만인 소량 위험물 신고 삭제
-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신고 삭제
- 영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이상의 특수 가연물 취급신 고 삭제
- 나. 소량 위험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20만원이하) 부과 규정 삭제 (안 제43조 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정진철)

본 안건은 내무부가 지난 2월 7일 밝힌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도에 위임된 화재예방 업무중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화재 안전관리에도 실익이 적은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신고사항으로써 소방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지정수량 5분의 1이상 1미만인

소량위험물 신고와 지정수량 10배미만의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 신고, 그리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 배이상의 특수가연물 취급신고를 삭제하는 것임.

이와 함께 조례 제43조 제1항의 벌칙에서도 소량위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따라서 금번 개정안 취지는 소방행정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운영상 화재예방의 실익이나 현실성 이 없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완화한 내용으로써 소방행정의 합 리적인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개선이라고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